

2025년 부산관광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선발 공고

부산관광공사에서는 지역청년의 구직과 직무능력개발을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체험형 청년인턴을 선발합니다. 관심있는 지역청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08월 06일

부산관광공사

1. 채용분야 및 개요

가. 모집구분: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분야	근무시간*	인원	보수
부산슈퍼 청사포점 판매 및 매장 관리	주40시간 *수~일요일 11~20시	1명	월2,490,660원 (기본급, 2025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나. 계약기간: 임용일 ~ 2025.12.31.(약 5개월)

다. 근무지: 블루라인 해변열차 청사포 정거장 인근

라. 참고사항: 협의하에 근무시간* 및 스케줄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반드시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 응시자격

- 연 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의거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청년
- 학 령: 제한없음
- 병 역: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면접시험 등)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하여야 함
- 응시제한: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공통)

부산관광공사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 이상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은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근무조건: 초과근로가 가능한 자, 임용예정일 당시 취업상태가 아닌자

※ 취업상태의 확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함

7) 기타사항: 각 시험 단계별 응시 가능자

나. 지역제한 : 아래 3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①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졸업예정자
- ② 공고일 이전부터 면접일까지 주민등록기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자
-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 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③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기준상 부산광역시에서 합산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 지역제한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 본교를 부산에 둔 타지역 캠퍼스 재학생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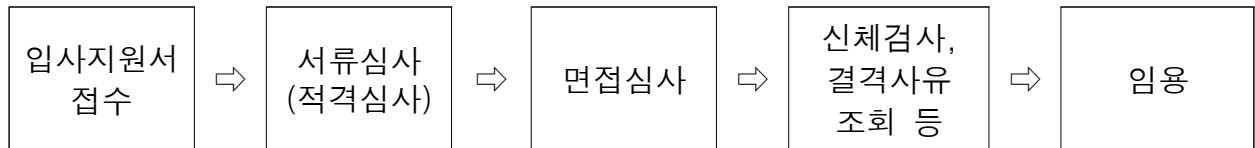
다. 가점사항

구분	대상	기준	가점
법정 (선택) 가점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
- ※ 모든 우대사항은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득점자만 적용
- ※ 적용의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가점합격률(30%)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됨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가산점수 인정하며, 가산점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3. 채용절차 및 시험일정

가. 채용절차



나. 시험일정(안)

채용절차	일 자	합격자 발표
지원서접수	8.6.(수) ~ 8.17.(일) 15:00	-
서류심사	8.18.(월) 또는 8.19.(화)	8.19.(화)
면접심사	8.20.(수) 또는 8.21.(목)	8.22.(금) 이내

- ※ 각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공사 채용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채용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임용예정일: 8. 27.(수)

4. 지원서 접수안내

- 가. 접수기간: 2025.8.6.(수) ~ 8.17.(일) 15:00
- 나. 접 수 처: 부산관광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접수
- 다.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1) 접수 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 2)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3)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최종제출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4:00까지만 가능합니다.
- 4) 입사지원서 제출 후 최종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마.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후 지원바랍니다.**

- 1) 지원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2) 지원서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가산점 비율 등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4) 지원서 작성 내용이 추후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 응시자격 및 가산점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증빙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나. 제출서류: 응시자격 및 가산점관련 서류 제출

구 분		제출서류
공 통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해 당 자	현역 복무중인 자	군복무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소속부대장이 발행, 전역예정일 기재)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발행)
	자격증 소지자	이력서 기재 자격증 사본 (원본지참)
	외국어 성적 소지자	이력서 기재 외국어 성적 증명서(사이버국가고시 등록 증빙 포함)

다. 유의사항

면접시험 시 응시자격 및 가산점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 경우 및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기재하는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6. 전형별 안내

가. 서류전형

- 선발기준: 응시자격 적격 여부 판단
- 선발규모: 응시자격 충족자 전원 합격

나. 면접전형

- 선발기준: 심층(경험·상황)면접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 선발

구분	평가요소		배점
면접전형	직업기초능력(60)	조직이해·직업윤리	20
		자원관리·문제해결	20
		의사소통·대인관계	20
	직무수행능력(40)	지식·정보·기술	20
		사업·업무관리	20

※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절사)까지로 한다

※ 예비합격 1배수 선발, 최종합격자 1년 이내(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임용포기 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7.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가. 신체검사

- 1) 대 상: 최종합격자
- 2) 제출자료: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및 영수증 또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대체통보서
- 3) 합격기준: 의료기관의 신체검사판정서상 합격여부로 판단

※ 신체검사 ‘불합격’ 또는 ‘보류’ 시 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결격사유 조회: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응시자격 등 확인

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 1) 최종합격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회합니다.
- 2) 취업제한자에 해당할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지원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오입력,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장애인·자격증·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가산비율 기재 착오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준수
- 응시원서 작성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및 가족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다. 불성실 기재(기관명 오기재, 무의미한 답변 등)에 따라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 라.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추후 허위사실(응시자격, 임용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마.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바. 최종합격자는 합격 예정 배수 범위 내 우대가점을 포함한 면접 시험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며,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절사)까지로 합니다.
- 사.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7일 전까지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 자. 최종합격자 중에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 또는 공사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응시자격 미달자, 비위면직자, 부정합격이 확인된 자는 합격이 취소되고 과락에 해당되지 않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발표일부터 1년 이내 임용 포기, 임용 후 퇴사, 채용비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차.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면접응시자에 한해 접수할 예정이며, 본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반환청구(불임) 할 수 있습니다.(최종합격자 제외)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방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을 이용하며 발송비용은 공사가 부담합니다.
 - 전자문서 접수시 채용종료 후 일괄 삭제하기 때문에 반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7조에 따라 채용된 직원과 관련된 인사자료 및 전형

단계별 평정표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하여 탈락자의 연락처 및 전형 단계별 평정표는 영구보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카. 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eb4773@bto.or.kr로 제출바랍니다.(전형별 결과발표일로부터 익일 17시까지)

※ 이의신청 처리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타. 부정행위자 발생시 공사 규정 및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에 따릅니다.

①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8조

-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②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항목

-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사·공단은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함

파.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면접전형 심사기준표 1부. 끝.

붙 임
면접심사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각 20점)
직업 기초 능력 (60)	조직이해·직업윤리	·지원분야와 관련하여 조직의 체제, 사업, 경영 및 대내외 환경변화를 이해하는 능력 ·직업생활을 위한 근로윤리, 공동체 윤리, 봉사정신, 책임 의식, 준법성에 관한 직업관
	자원관리·문제해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 예산, 물적자원,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할당하는 능력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여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의사소통·대인관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서이해, 문서작성, 경청,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말하는 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팀웍,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 능력
직무 수행 능력 (40)	지식·정보·기술	·지원분야에 관련된 전문지식, 정보수집, 분석, 활용, 관리하는 능력 ·지원분야와 관련된 기술(도구, 장치 등)을 이해하고 업무수행시 선택 및 적용하는 능력
	사업·업무관리	·사업·업무 관리를 위해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처리, 분석, 대안제시, 그 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능력